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고 일 준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검 토 보 고 서

## 1. 회부경위

본 조례안은 2008년 4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08년 4월 11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2. 제안이유

상위 법령 및 현실운영 등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행정효율을 제고함은 물론 행정서비스의 향상을 기하기 위함

## 3.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1조)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제141조 → 제104조 및 제151조

나. 혁신담당관실 소관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별표 일련번호 1)

○ “Happy Call센터 운영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행정서비스의 품질 향상 및 업무 효율 제고와 객관적 운영을 기함

※ 사무내용 : 전화로 민원처리에 대한 만족도, 불만요인, 건의사항 등 조사

다. 전략산업팀 소관 “민속공예산업 육성사무”의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별표 일련번호 5)

○ 도내 공예단체 및 법인을 대상으로 공개모집하여 경쟁력과 책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위탁대상기관을 포괄적으로 지정

라. 청소년아동과 소관 “청소년상담실 운영에 관한 사무” 삭제

○ 충청북도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도 직영으로 운영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

마. 보건위생과 소관 “한센이동진료사업 사무” 삭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함

## 4. 검토의견

이 개정조례안은 Happy Call센터[1] 운영의 신규 민간위탁과 그동안 민간위탁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현실에 맞게 보완하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행정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Happy Call센터 운영의 신규 민간위탁, 경쟁력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공예품 경진대회 위탁대상기관의 포괄적 지정, 도 직영(直營) 전환에 따른 청소년상담실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고,

또한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 및 2008년 한센사업지침에 따라 한센이동진료사업이 운영됨에 따라 동 진료사업을 민간위탁 대상사무에서 삭제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음.

다만, Happy Call센터의 경우 직영과 민간위탁 시 운영비에 대한 비교분석 및 민간위탁 시 직원의 근로조건 보호 등 고용관계에 관한 사항

---

1) Happy Call센터는 2006.7.1 혁신담당관실 내에 설치되었으며, 민원처리 결과에 대한 만족도·불만요인·건의사항 등을 전화로 조사

그리고 청소년상담지원센터를 직영으로 전환하는 사유에 대해서는 보충 설명이 필요함.

붙임 : 충청북도 사무의 위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